

청주교육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규정

제정 2006. 3. 17 규칙 제1153호
1차 개정 2020. 5. 11. 규칙 제1526호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상담센터 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5.11.>

② 센터에는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5.11.>

제3조 (기능 및 활동) 센터는 학생상담활동과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기능을 하며,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상담활동은 학생 생활 연구, 개별 학생 상담 및 집단 학생 상담, 학생 부직 알선,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상담을 수행한다.
2. 학생봉사활동은 일반 봉사(교육 봉사, 사회 봉사)와 특성화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4조 (위원회) 센터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·운영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전담교수를 포함한 우리대학 전임교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전담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생처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0.5.11.>

② 전담교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.

③ 간사는 학생처 상담활동 및 봉사활동 담당자로 하며 회의록 작성, 행정사항 집행, 회의내용 보고 등을 한다.<개정 2020.5.11.>

제6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상담활동 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생봉사활동 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 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단, 가부동수 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(2006. 3. 17 규칙 제1153호)

제1조 이 규정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00. 00. 규칙 제1526호)

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